

2017년 하반기·2018년 9급 시험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김진영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칭은 허가이지만 공법관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학문상 인가에 해당한다.
- ③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심사기준 중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후에 추가·변경된 법조인 배출실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시 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등의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
- ③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3.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에서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 ②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③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경매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④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5. 형질변경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행정청이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 ③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6.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②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에 공립대학교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③ 무효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8.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②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④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9.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허가권자가 내린 부적정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③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작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해당한다.
- ④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권의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지방병무청장이 징병 재신체검사를 거쳐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에,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13.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②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③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된다.
- ② 갱신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다.
-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15.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학생들은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국립대학 교수에게는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营业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16.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 ③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7.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 ③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 ④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므로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8. 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③ 과징금 처분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9.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

③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과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이주대책의 수립자는 사업시행자이지만 공무수탁사인은 불가능하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할 수 없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정답 및 해설]

1. ③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9.2.26, 2006두16243).

- ① 대판 2006.3.9, 2004다31074
- ② 대판 1991.12.24, 90다12243
- ④ 대판 2010.1.28, 2009두4845

2. ④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 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7.23, 2000두9946).

- ① 대판 2009.12.10, 2009두8359
- ② 대판 2000.5.26, 98두6500
- ③ 대판 2005.4.28, 2004두8828

3. ④

경매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 ① 대판 2008.5.29, 2004다33469
- ②③ 대판 2008.9.25, 2006다18228

4. ②

취소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08.4.17, 2005두16185 전합).

- ① 대판 2013.3.21, 2011다95564 전합
- ③ 대판 2009.9.17, 2007다2428
- ④ 대판 1992.12.24, 92누3335

5. ③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5.8.19, 2003두9817).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2013.10.31, 2013두9625).
- ② 대판 2010.2.25, 2009두19960
- ④ 대판 2004.12.9, 2003두12073

6. ③

위 문제는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판례는 문제화 하였다. ③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6.8.17., 2014다235080).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②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갑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④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4, 98무37).

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취소소송과 달리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 ④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4.26, 81누423). ①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이다(대판 2005.5.13, 2004다8630). ②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③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판 2008.1.17, 2007두21563).

9. ④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9.11.26, 99부3).

①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8, 97누21086).

② 예외적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③ 대판 2010.6.24, 2007두16493

10.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06.09, 97누19915).

①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에 대하여 판례는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9. 7.23, 97누6261). ②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道)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④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결 1992.10.1, 92헌마68.76).

11. ④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대판 1997.7.22, 97다3200).

①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허가하거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발굴허가가 신청된 고분 등의 역사적 의의와 현상, 주변의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온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대판 2000.10.27, 99두264).

②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7.12.13, 2005다66770).

③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24, 2008두8970).

12. ④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① 판례는 직권취소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2002.5.28, 2001두9653).

③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선결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등의 절차에서 무효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8, 2003두1806).

①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헌재결 2002.5.30, 2000헌바58, 2001헌바3).

② 기본적으로는 계획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12.9, 94누8433 ; 대판 2003.9.23, 2001두10936).

③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 12.10, 85누186).

14. 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

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② 구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은 새로운 행정행위이므로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3.6.29, 92누15314).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대판 2004.11.25, 2004두7023).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7다63966).

15.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1.12.8, 2008두18342).

① 대판 1993.7.27, 93누8139

② 대판 1995.12.12, 95누11856

④ 대판 2010.5.13, 2010두2043

16. ④

절차하자의 독립된 위법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므로 실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당해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① 절차하자는 쟁송제기 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개별규정에서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③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2.10, 86누91).

17. ④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판 1982.7.27, 82다173).

①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의 취소 및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누438).

② 대판 2009.7.23, 2008두10560

③ 대판 2005.4.14, 2003두7590

18. ②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따른다.

① 제제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인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과징금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 법원은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있다.

④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절의 일종인 과태료와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 등).

③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1994.6.30, 92헌바38).

④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3. 1.24, 2011두10164).

20. ②

옳지 않은 지문은 ㉠㉡이다.

㉠ 이주대책의 수립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공무수탁사인도 가능하다.

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0.3.25, 2009두23709).

㉕ 대판 1994.5.24, 92다35783 전합

㉖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헌재결 2006.2.23, 2004헌마19).

㉗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6.7.14, 2014두43592).

㉘ 대판 2010.3.25, 2009두23709